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3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국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8가단123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화성시 D 답 182㎡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70,200,4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20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화성시 D 답 182㎡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17,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내지 제6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5.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94,940,000원이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제19행, 제20행의 ‘415,579,509원’ 부분을 ‘394,940,000원’으로 각각 고치고, 제6면 제20행, 제8면 제9행, 제9면 제15행의 ‘90,839,920원’ 부분을 ‘70,200,411원’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제9면 제3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의 ‘따라서’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액과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인 70,200,411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70,20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이효진, 판사 이국현